

(사)전국한우협회 감사 선거 공고

(사)전국한우협회 정관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회장 선거규정, 임원 선거규정에 따라 감사 선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일시 및 장소(임원 선거규정 제4조)

1) 선거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13:00 정기총회

2) 장소 : 흥익대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안터길 89 전화 : 044-860-7000)

2. 선출 임원의 정수 및 임기(정관 제12조, 정관 제13조, 정관 제17조)

| 직 | 감사 | 비고 |
|----------|-------------------------------|----|
| 감사 선출 정수 | 2인 | |
| 임 기 | 2022. 3. 1 ~ 2024. 2. 29 <2년> | |

3. 후보 등록 자격

1) (사)전국한우협회 회원(정관 제5조)

2)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회장선거규정 제8조, 임원선거규정 제9조)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본회의 정회원으로 선거공고일 현재 5년 연속 회원이 아닌 자
- 선거공고일 기준 생산이력제 등록두수 2년 평균 한우 50두 이하 사육 회원
- 본회가 하는 사업과 동일 사업이나 관련 경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선거운동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구체적 위반 사실이 드러난 회원

4. 후보자 등록 서류(회장 선거규정 제10조, 임원 선거규정 제10조)

- 1) 감사 후보자는 선거인(대의원)의 5%의 추천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함.(회장 선거규정 제10조, 임원 선거규정 제10조)
 -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1부(소정양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대의원이 자필 기명, 서명 또는 날인한 것)
 - 선거공고용 원고 1부(소정 양식) 및 사진(반명함판<3×4cm>) 1매
 -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선거공고용에 기재된 항목별로 제출
 - 사육두수 확인용 농장별 한우 사육 개체 현황 1부(소정 양식)
 - ※ 첨부 서류 : 농장사육개체 현황, 양수양도 신고현황, 농장별 도축 및 등급 판정 결과, 사료 거래 원장 및 대금 결제 내역
 - 사퇴서 1부(소정 양식, 해당자에 한함)
 - 공명선거 서약서 1부(소정 양식)
- 2) 감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함(임원선거규정 제10조)
 - 본회의 부회장, 이사(도지회장 포함), 감사, 시군지부장이며 단, 부회장, 감사가 동일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 및 본회의 직원

5. 후보자 등록기간·방법 및 접수 장소(회장선거규정 제9조, 임원선거규정 제10조)

- 1) 등록기간 : 2022년 1월 18일(화) 09:00 ~ 1월 24일(월) 17:00 <7일간>
- 2) 등록 방법 : 방문, 우편 접수, 팩스 접수 ※ 우편접수는 등록기간내 도착분에 한하며, 팩스접수는 가능하나 원본은 등록기한내 도착하여야 함.
- 3) 등록장소 및 문의 : (사)전국한우협회 중앙회<기획총무국>
(우편번호 : 0664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제2축산회관 2층>
(문의 전화 : 박선빈 국장 <02>525-1053<내선 209> 010-9022-1883)
- 4) 선거공고문, 후보자 등록양식 및 선거관련 정관 및 회장·임원선거규정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하며, 기획총무국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립니다.

6. 후보자 기호 추천(임원선거규정 제13조)

- 1) 추천일 : 2022년 1월 25일(화)
- 2) 장소 : (사)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사무실

붙임>

1. 감사 후보자 등록 소정 양식(1~7)
2. 선거관련 정관 및 회장·임원 선거규정 -끝-

2022. 1. 17.

(사)전국한우협회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인



붙 임 1>

『감사 후보자 등록 양식 1』

감사 후보자 등록 신청서

1. 성 명 : (한 자 :)
 2. 주민등록번호 :
 3. 생 년 월 일 : (휴대폰 번호 :)
 4. 주 소 :

2022년 2월 23일 실시하는 감사 선거에 있어 관련 서류를 갖추어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사)전국한우협회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2. 감사 후보자 대의원 추천서(2종) (서식 3-1, 서식 3-2)
 3. 선거공고용 원고 1부(서식 4), 사진(반명합판, 3×4cm) 1매 별도 제출
 4.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선거공고용에 기재된 항목별로 증명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
 5. 사육두수 확인용 농장별 한우 사육 개체 현황 1부(서식 5)
 ※ 첨부 서류 : 농장사육개체 현황, 양수·양도 신고현황, 농장별 도축 및 등급 판정 결과, 사료 거래 원장 및 대금 결제 내역
 6. 사퇴서 1부(서식 6, 해당자에 한함)
 7. 공명선거 서약서 1부(서식 7)
-

감사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증

_____ 귀하

귀하의 감사 후보자 등록 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 아 래 -

1. 접수 일시 : 2022. . . .
 2. 접수 번호 :
 3. 접수 조건 :
 4. 공지 사항 : 가. 접수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접수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 취소됨.
 나. 후보자 기호결정은 후보자가 불참시 임원선거규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사)전국한우협회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인)

『감사 후보자 등록 양식 2』

| 이 력 서 | | |
|--|------|-------------|
| 반명합판(3×4cm) 사 진 | 성 명 | (한 자 :) |
| | 주 소 | |
| | 생년월일 | . . . (만 세) |
| 년월일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월일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 |
| 년월일 | 상 훈 | |
| | | |
| | | |
| 2022. . . 위 사실과 틀림 없음. 확인자 : ① | | |

감사 후보자 대의원 추천서

- 후보자 성명 :

위 사람을 전국한우협회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대의원)

| 일련 번호 | 성 명 (자필 기재) | 주 소 | 생년월일 | 휴대폰번호 | 서명 또는 날인 |
|----------|-------------------|-----|------|-------|------------|
| 1 | | | | | (서명 또는 날인) |
| 2 | | | | | (서명 또는 날인) |
| 3 | | | | | (서명 또는 날인) |
| 4 | | | | | (서명 또는 날인) |
| 5 | | | | | (서명 또는 날인) |
| 6 | | | | | (서명 또는 날인) |
| 7 | | | | | (서명 또는 날인) |
| 8 | | | | | (서명 또는 날인) |
| 9 | | | | | (서명 또는 날인) |
| 10 | | | | | (서명 또는 날인) |

(사)전국한우협회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감사 후보자 대의원 추천서

- 후보자 성명 :

위 사람을 전국한우협회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대의원)

| 성명 (자필 기재) | 주소 | 생년월일 | 휴대폰번호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서명 또는 날인) |

(사)전국한우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감사 후보자 등록 양식 4』

선 거 공 보

반명함판(3×4cm)

사 진

성 명 : (한자 :)

주 소 :

생년월일 : . . . (만 세)

학력 •

•

•

경력 •

•

•

•

•

소견 •

•

•

•

•

<증명서 제출 및 소견 추가 작성>

1. 학력 및 경력에 기재된 사항은 항목별로 증명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
2. 소견 내용 추가는 A4용지 1매 한도 작성 제출

한우 사육 개체 현황

- 성명(농장명) :

- 주소 :

- 한우 사육 현황

단위 : 두

| 기 간 | 양수·생산 | 도축·양도·폐사 | 현재 두수 | 비 고 |
|----------------------|-------|----------|-------|-----|
| 2019.12.31일자 | ----- | ----- | | |
| 2020.1.1.~12.31(1년간) | | | | |
| 2021.1.1.~12.31(1년간) | | | | |
| 2022.1.1.~1.17일 까지 | | | | |
| 계 | | | | |

※ 첨부 서류 : 농장사육개체 현황, 양수·양도 신고현황, 농장별 도축 및 등급 판정결과, 사료 거래 원장 및 대금 결제 내역 등

2022. . .

발급 기관명 :

(인)

(사)전국한우협회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감사 후보자 등록 양식 6』 : 해당자에 한함

사 퇴 서

성 명 : Ⓜ인

직 책 :

본인은 2022년 2월 23일 실시되는 전국한우협회 감사 선거에
입후보 하기 위하여 전국한우협회 _____직을 사퇴 합니다.

2022년 월 일

(사)전국한우협회장 귀중

공명선거 서약서

본인은 감사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공명선거 사항에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서도 금품수수, 향응 제공, 재산상의 이익,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며, 또한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지 않으며, 문자 발송은 후보자 기호 확정일 부터 선거일 전일 24:00시 까지 1일 1회만 발송 할 것이며, 문자 내용은 발송전 선관위에 제출하여 승인후 발송하며, 사전 여론조사와 서신발송은 하지 않는다.
3. 타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재산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한 사실을 지적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흔쾌히 승복한다.

2022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사)전국한우협회 감사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선거관련 정관 및 회장·임원 선거 규정

□ 정관

1999. 9. 14 제정
2006. 2. 24 개정
2007. 2. 28 개정
2010. 2. 25 개정
2014. 10. 2 개정
2017. 4. 19 개정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및 가입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정회원 및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지회, 지부 활동을 하는자
2. 일반회원 :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지회, 지부 활동을 하지 않는자
3. 특별회원 : 한우 전후방산업 분야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 【임원의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인
3. 이 사 : 30명 이내 (회장, 부회장, 지회장, 사외이사 포함)
4. 감 사 : 2명

② 제1항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과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선출직 2인과 지명직 1인으로 하고, 선출직 2인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지명직 1인은 회장이 선임한다.
- ③ 이사는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단,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회장 사퇴시 이사직도 사퇴한 것으로 본다.
- ④ 사외이사는 한우관련 단체의 장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로 선임된 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전보되거나 퇴직할 때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⑤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순위를 정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사항을 의결한다.
- ⑤ 이사는 사전 부여되지 않은 안건을 참석이사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일자는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월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 이외의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일자는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월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감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총회 개최가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총회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③ 지명직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④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고 임기 만료시에는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규정

회장 선거 규정

2002. 2. 26 제정
2009. 12. 9 개정
2012. 4. 6 개정
2013. 12.19 개정
2014. 2. 7 개정
2016. 12.27 개정
2017. 3. 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회장의 선출과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선거인】

① 총회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는 1인 1표로 하며, 선거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4조 【선거일】 선거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실시한다.

3. 후보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4. 선거일 공고 이후에 천재지변 기타 명백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정할 수 있다.

제2장 선 거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① 회장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그 존속기간은 선거일 공고일 전일부터 선거일후 1년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는 3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다만,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5.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6.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지명
7. 선거공보와 선거운동 방법결정 및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8. 당선인 결정
9.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및 종사원을 두되 위원장이 본회의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한다.

④ 본회는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선거일 공고】

① 회장은 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을 선거일 18일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선거일시·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후보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6. 본회의 정회원으로 선거공고일 현재 5년 연속 회원이 아닌 자
7. 선거공고일 기준 생산이력제 등록두수 2년 평균 한우 50두 이하 사육 회원
8. 본회가 하는 사업과 동일 사업이나 관련 경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9. 선거운동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구체적 위반사실이 드러난 회원

제9조 【후보자 등록기간】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7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1회에 한하여 3일간 연장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대의원)의 5%의 추천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소정양식)
2. 이력서 (소정양식)
3. 후보자 추천서 (소정양식)
4. 선거 공고용 원고 및 사진 1매
5. 사육두수 확인용 농장별 한우사육 개체 현황 (소정양식)
6.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② 제1항 제3호의 추천서는 위원회가 작성·교부하는 양식에 대의원이 자필 기명날인한 것이라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부회장·이사(도지회장 포함)·감사
2. 공무원 및 본회의 직원

3. 회장은 후보자로 등록한 다음날부터 선거기간까지 그 직은 유지하되, 업무는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회장 중 1인에게 위임한다.

제11조 【기금납입】

①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우산업발전기금을 본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회장 후보자 2,000만원
2. 부회장 후보자 100만원(지명직 부회장 포함)

② 선거 운영에 관한 비용은 후보자가 납입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선거 종료 후 정산 처리한다. 선거관리위원, 선거준비용 외 잔액은 한우발전기금으로 별도 회계로 운영한다.

제12조 【후보자 추천】 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13조 【후보자 등록심사 및 등록공고】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선거권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구비서류 미비사

항을 유선 또는 우편으로 보완요구를 하고 보완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후보자등록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후보자를 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주사무소에 게시·공고하고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 취소】

①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회장에게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접수한 후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후보자와 회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사무소에 이를 게시·공고하고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후보자 기호결정】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간의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제16조 【선거 운동】

① 이 규약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제시·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선거업무에 관한 통상적인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시군지부장 회의 등 공식적인 회의에는 참석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60일전부터 예비후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응 제공, 서신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의 확인은 후보자등록자로 하며, 부정 선거운동 여부를 소급해 적용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재산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한 사실을 지적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고 그 비용은 본회의 부담으로 한다.

⑥ 후보자는 문자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여론조사는 허용하지 않으며, 후보자 합동정책발표와 후보자간 토론회는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7조 【선거 공보】

① 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선거일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및 경영에 관한 소견과 자기소개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가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된 선거공보의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다만, 원고 내용중 허위 사실에 대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3일 이내에 그 증명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선거공보가 작성·인쇄되어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기호 순에 의하여 게재하며, 단색으로 인쇄한다.

⑥ 선거공보에는 투표일시 및 장소 등 선거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인중에서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각 3인을 지명한다.

②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선거록을 작성한다.
2.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투표록을 작성한다.
3.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개표록을 작성한다.

③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는 상호 겸직 할 수 없다.

제19조 【참관인】

① 후보자는 선거인중에서 선거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3일까지 위원회에 신고하여 선거실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이 부정행위 기타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선거관리자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진행】

① 의장은 총회에서 투표에 앞서 기호 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며, 후보자로 하여금 10분 이내에 협회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21조 【투표】

① 투표소는 총회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 투표는 기표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③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후보자 기호순으로 한다.

④ 투표관리자는 투표 개시전에 투표함이 비어 있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투표관리자는 선거인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에 확인 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⑥ 투표관리자는 투표종료 즉시 선거관리자와 함께 투표함을 봉쇄·봉인한 후 이를 개표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 【개표】

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관리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별하여 봉투에 넣되 유효투표지는 이를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선거관리자와 개표관리자가 함께 봉인한 후 위원회에 인계한다.

③ 선거관리자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 개표관리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3조 【선거무효】

① 선거에 있어 총 투표수가 투표인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소에 비치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기표(“○”)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것

② 유·무효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자와 개표관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당선인 결정】

①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그 중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되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총회의 의장에게 통지하고 총회의 의장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선포하여야 한다.

제26조 【당선의 통지 및 공고】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당선의 통지를 하고 이를 지체없이 주사무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였거나 사망한 때

3. 당선인의 임기개시전에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음이 발견 또는 발생된 때

② 임원이 임기중 제1항에 정하는 사유이외의 사유로 공석이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8조 【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공고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9조 【기록 보존】 회장은 선거록·투표록·개표록 및 투표지와 위원회의 의사록을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과 소송이 계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30조 【서식 등】 이 규약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기타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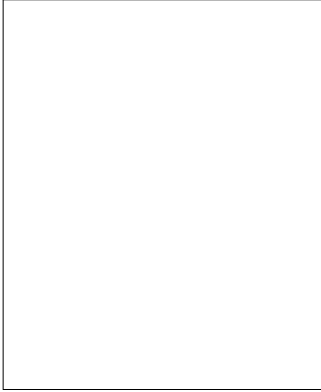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8조 ①항 7호는 개정일로부터 2년 경과후 시행한다.

『기호 번』

선거공보



성명 : (한자 :)

주소 :

생년월일 : . . . (당 세)

학력 .

.

.

경력 .

.

.

.

.

소견 .

.

.

.

.

.

□ 규정

임원 선거 규정

2004. 2. 26. 제정
2009. 12. 9. 개정
2012. 1. 31. 개정
2013. 12. 19. 개정
2014. 2. 7. 개정
2016. 12. 27. 개정
2020. 2. 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3조에 의거, 회장 이외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회장 이외의 임원 선출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선거인】

① 총회 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한다.

②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는 1인 1표로 하며, 선거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4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실시한다.

③ 후보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이사 선출

제5조 【이사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외 이사의 정수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② 당연직 이사와 추천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며, 사외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③ 회장은 1항 이외의 한우관계 저명인사 및 단체 대표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 【이사 결격사유】 회장 선거규정에서 정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제3장 부회장 및 감사 선거

제7조 【부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 목적】

① 정관 13조 2항 규정에 따라 부회장 3인중 총회에서 선출토록 한 부회장 2인에 대한 선거 관리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관 제13조 1항 규정에 따라 감사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관리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선거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부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①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설치와 직무는 회장선거 규정에 따른다.

② 회장 선거와 동시에 부회장, 감사 선거가 실시될 경우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부회장 및 감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후보자 결격사유】 회장 선거규정에서 정한 후보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부회장 및 감사가 될 수 없다.

제10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 사항에 대하여는 회장선거 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회장 및 감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부회장·이사(도지회장 포함)·감사·시군지부장이며, 단, 부회장, 감사가 동일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무원 및 본회의 직원

제11조 【후보자 추천】 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12조 【후보자 등록심사 및 등록공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선거권을 심사하여 접수하고, 주사무소에 게시 공고하고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후보자 기호결정】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간의 추첨에 의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제14조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인중에서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각 3인을 지명한다.

- ②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선거록을 작성한다.
 2.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투표록을 작성한다.
 3.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개표록을 작성한다.
- ③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는 상호 겸직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의 진행】

- ① 총회 의장은 총회에서 투표에 앞서 기호순 으로 후보자를 소개하며, 후보자로 하여금 1회에 한해 5분 이내에 협회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 ② 총회 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16조 【투표 및 개표】 회장 선거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제17조 【당선인 결정】

- ①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최다수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② 차순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③ 후보자가 각각 2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되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선포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선의 통지 및 공고】 총회 의장은 당선인에게 당선의 통지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주사무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음이 발견 또는 발생된 때
- ② 임원이 임기중 제1항에 정하는 사유이외의 사유로 공석이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20조 【임기 개시일】

-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공고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 칙

제21조 【서식 등】 이 규약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기타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